

화순군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4.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4. 17

다. 상 정 일 자 : 2001. 4. 17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배 병 선

나. 제정사유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다. 주요내용

-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목적 (안 제1조)
 -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안 제3조)
 - 홈페이지 구성내용
 -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등 행정정보 제공
 -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등 지역정보 제공
 - 사이버 민원실 운영
 -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등 주민의 참여 유도
 - 전자우편 ID 이용
 - 국내·외에 군의 홍보
 -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 시스템운영과 홈페이지 관리 : 기획예산실
 - 자료제공 및 관리 : 분야별 담당부서

- 관리부서에서 삭제하는 경우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불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상난성의 내용등
- 게시자료 삭제할 경우 : 해당 게시판에 삭제한 이유를 공개,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전화나 전자 우편으로 통보
-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 (안 제8조)
 -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
 -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운영 :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
-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안 제12조)
-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 마당 운영 (안 제13조)
-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보급 (안 제14조)
-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 (안 제16조)
 -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연)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 정부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와의 지속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다만, 홈페이지의 보다 충실한 관리를 위하여 게시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토록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는 개인 DB는 암호화 하는 방법등으로 보다 철저한 인터넷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가급적 조속히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결의 답변 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 생략 ”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첨 부 :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화순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제고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과 홈페이지 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홈페이지 분야별 운영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실과소 (이하 "업무부서"라 한다)에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①기획예산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①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업무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분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자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

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답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민원담당부서의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답 기능 제공) ①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답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답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담당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은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①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물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기획예산실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기획예산실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번호 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관리)① (생략)</p> <p>②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p> <p>1 ~ 9 (생 략)</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기획예산실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u>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u> 삭제할 수 있다.</p> <p>1 ~ 9 (현행과 같음)</p>